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8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계약과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포함)을 말합니다.
2. “중소기업 핵심인력”(이하 “핵심인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채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 “성과보상기금”은 법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에 따라 설치·구성된 재원을 말합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라 한다)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으로 미리 약정한 일정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가입기간에 따라 2년형 청년공제와 3년형 청년공제로 구분합니다.
5.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참여 경로는 취업인턴 경로,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라 한다) 경로, 일학습병행훈련(이하 “일학습”이라 한다) 경로, 고용센터 알선 등(이하 “센터알선”이라 한다) 경로를 말합니다.
6. “공제계약”은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할 것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23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7. “계약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개정 2019.3.19.>
8. “공제부금”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 가입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이하 “기업기여금”이라 한다), 법 제3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이하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9. “취업지원금”은 정부가 청년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10.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청년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기업기여금 및 기업순지원금을 말하며, 취업지원금과 그 밖의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포함합니다.
11. “공제금”은 제23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에 가입한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개정 2019.3.19.>
12. “청약 철회”는 공제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3. “계약 취소”는 유효하게 성립된 공제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4. “중도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15. “연계가입”은 청년공제의 계약자가 공제사유가 발생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재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근로자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한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설 2021.3.11.>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청년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그 개정약관은 개정 이전에 가입한 계약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개정 2019.3.19.>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시행지침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지합니다. <개정 2019.3.19.>

④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항과 제도 정착을 위하여 정부에서 긴급하게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제2장 공제의 가입 및 공제계약

제4조(공제 가입대상) ①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시행지침의 참여자격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합니다.

②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은 시행지침의 참여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합니다.

제5조(계약의 청약) ① 공제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은 고용부로부터 청년공제 참여자격을 인증 받은 후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핵심인력의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 계약 청약서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지침에서 신청기한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개정 2019.3.19., 2020.3.30.>

③ 청약서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는 청년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6조(청약의 승낙)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공제가입이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약을 승낙하고, 이를 승인일이라 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고용부에서 참여자격을 재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약을 거절한 때에는 해당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제7조(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청약을 승인한 일자에 성립한 것으로 보며, 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5일 이전 정규직 취업자나, 2018년 6월 이전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은 핵심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일자에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시행지침에서 계약의 성립일자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따릅니다.

③ 공제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에게 각각 공제가입증서를 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8조(공제 가입기간) 공제 가입기간은 2년형 청년공제는 공제계약의 성립일로부터 24개월, 3년형 청년공제는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로 합니다.

제9조(청약의 철회) ① 청약자는 계약의 성립일 이전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 따라 청약 철회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일 이후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계약의 취소)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4.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 따라 계약 취소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취소기한 이후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에게 취소기한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1. 중소기업이 폐업, 부도, 해산한 때
2. 핵심인력이 퇴직한 때
3. 핵심인력이 사망한 때
4. 핵심인력이 공제 가입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5. 가입 기업이 공제 가입 이후 대기업으로 분류될 때

④ 공제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이 있는 때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자에게 취소반환금을 지급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제1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공제계약 체결시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제12조(재가입 및 연계가입) ① 제23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3.30.> <개정 2021.3.11.>

② 제1항에 의한 연계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로 합니다.

③ 연계가입 할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의 계약 약관을 따릅니다.

④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계약자인 핵심인력은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⑤ 재가입에 관한 자격,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신설 2021.3.11.>

제13조(계약자 변경승인) ① 중소기업에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지체 없이 고용부에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고용부로부터 변경사항에 승인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공제가입증서를 재발급합니다. <개정 2019.3.19.>

제14조(상호, 주소 등 변경사항 통지) ① 계약자는 상호, 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계약자가 통지한 최종의 상호, 주소 또는 연락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19.3.19.>

제3장 공제부금의 납입 등

제15조(공제부금 납입기준 및 취업지원금 적립기준) ① 2년형 청년공제는 공제부금과 취업지원금을 합산하여 총 1,600만원으로 합니다.

② 3년형 청년공제는 공제부금과 취업지원금을 합산하여 총 2,994만원으로 합니다.

③ 2년형 청년공제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300만원으로 하며,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매월 125천원씩 균등하게 납입합니다.

④ 3년형 청년공제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총 594만원으로 하며,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매월 165천원씩 균등하게 납입합니다.

⑤ 2년형 청년공제는 기업기여금은 400만원으로 하며, 총 5회(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후 45만원, 6개월 후 70만원, 12개월 후 95만원, 18개월 후 95만원, 24개월 후 95만원)에 걸쳐 분할하여 납입합니다.

⑥ 3년형 청년공제는 기업기여금은 600만원으로 하며, 총 7회(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후 50만원,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75만원, 18개월 후 100만원, 24개월 후 100만원, 30개월 후 100만원, 36개월 후 125만원)에 걸쳐 분할하여 납입합니다.

⑦ 2년형 청년공제는 취업지원금은 900만원으로 하며, 총 5회(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후 75만원, 6개월 후 150만원, 12개월 후 225만원, 18개월 후 225만원, 24개월 후 225만원)에 걸쳐 분할하여 적립합니다.

⑧ 3년형 청년공제는 취업지원금은 1,800만원으로 하며, 총 7회(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후 150만원, 6개월 후 175만원, 12개월 후 225만원, 18개월 후 250만원, 24개월 후 323만원, 30개월 후 325만원, 36개월 후 350만원)에 걸쳐 분할하여 적립합니다.

⑨ 취업지원금은 근무기간까지의 자기부담금 납부상태가 모두 정상인 경우에 적립합니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서 정부지원금 지급요건의 변경, 예산 변

동 등의 사유로 적립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따릅니다.

제16조(공제부금 납입방법) ①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의 수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명의의 공제사업 전용 공제부금 관리계좌로 하며, 계약자별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가상계좌 및 공제부금 수납여부는 각 계약자가 청년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핵심인력은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의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을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의 기업기여금의 납입방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정부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입합니다. 정부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개정 2019.3.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전에 참여 신청한 계약자는 참여 경로에 따라 기업기여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입합니다.

1. 취업인턴, 센터알선, 취성패 2유형, 일학습 경로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정부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납입합니다. <개정 2019.3.19.>

2. 취성패 1유형 경로를 통해 가입한 중소기업은 청약서에 표시한 공제부금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제3항 및 제5항제2호에 따른 공제부금 납입기일은 납입주기 해당월의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로 정할 수 있으며, 각 계약자가 지정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됩니다.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납입기일로 하며, 해당 납입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3.11.>

⑦ 공제부금은 납입주기 이전에 먼저 납입하거나, 회차별 납입금액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제부금 납입기일 또는 자동이체 출금 지정계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17조(취업지원금 적립방법) 제15조제7항 및 제15조제8항의 취업지원금은 정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개설한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취업지원금의 신청, 지급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개정 2019.3.19.>

제18조(공제부금 납입중지) ① 핵심인력 또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15일 이상 경과하거나 정부지원금 적립주기 내 누적 15일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4.5.> <개정 2021.3.11.>

1. 병역의무 이행(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기간 <신설 2021.3.11.>
2. 육아휴직 기간 <신설 2021.3.11.>
3. 업무상 재해 : 24개월 <신설 2021.3.11.>
4. 개인 질병 : 12개월 <신설 2021.3.11.>
5.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신설 2021.3.11.>
6.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다만, 천재지변 및 사고에 의한 휴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받은 경우 12개월) <신설 2021.3.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 따라 직권에 의한 납입중지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합니다. <개정 2019.4.5., 2020.3.30.> <개정 2021.3.11.>

1. <삭제 2021.3.11.>
2. <삭제 2021.3.11.>
3. <삭제 2021.3.11.>
4. <삭제 2021.3.11.>

③ 납입중지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중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으며, 납입중지 기간 중에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납입중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한 경우, 제8조의 공제 가입기간은 공제부금 납입중지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19조(공제부금 납입지체의 통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1개월분 이상 공제부금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납입지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제20조(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의 반환) ①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이 회차별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가 없는 금액이 납부된 때에는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자 또는 정부지원금을 적립한 고용센터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진공은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반환 사유를 먼저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부금을 납부한 계약자 또는 해당 정부지원금을 적립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③ 시행지침 또는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납부된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반환 사유, 납부일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반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9.3.19.>

제4장 공제계약의 해지

제21조(중도해지) ① 계약자는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중도해지는 계약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제26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시행지침에 따라 직권에 의한 중도해지 대상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1. 중소기업이 폐업, 부도, 해산한 때
2. 핵심인력이 퇴직한 때
3. 핵심인력이 사망한 때
4.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한 때
5. 가입 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될 때

④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인 핵심인력이 6회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시행지침에 따라 해지 대상자로 통보된 때에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지침에 따라 공제부금 납입이 중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개정 2019.3.19., 2020.3.30.>

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해지사유를 확인하거나, 공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자에게 해지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제22조(해지환급금의 지급)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계약이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2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계약자와 정부에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9.3.19.>

②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기여금 : 정부
 2. 2017년 이전에 참여 신청한 계약자의 기업기여금(취업인턴, 취업패 2유형, 일학습, 센터알선 경로) : 정부
 3. 2017년 이전에 참여 신청한 계약자의 기업기여금(취성패 1유형 경로) : 중소기업
 4.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 핵심인력
 5. 취업지원금 : 핵심인력 및 정부
-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취업지원금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핵심인력에게 일부만 지급하며, 핵심인력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5일 이전 정규직 취업자나, 2018년 6월 이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제2항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금은 중도해지의 사유 및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중도해지 사유발생일까지의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핵심인력에게 지급하며, 핵심인력에 지급하지 아니한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합니다.
- ⑤ 해지시기별로 지급 및 반환되는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으며,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1. 2019년 7월 1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0.3.30.>

구분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년형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	-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0원	0원	225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	-
3년형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0원	0원	165만원 및 이자	240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435만원 및 이자

2. 2018년 3월 15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 중 2018년 6월 이후부터 2020년 이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0.3.30.>

구분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년형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	-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	-
	취업지원금	0원	112.5만원 및 이자	225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	-
3년형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취업지원금	0원	97.5만원 및 이자	165만원 및 이자	240만원 및 이자	337.5만원 및 이자	435만원 및 이자

3. 2018년 3월 15일 이전 정규직 취업자나, 2018년 6월 이전 참여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0.3.30.>

공제계약 성립일로 부터 근무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및 그 기간이자 해당분				
취업 지원금	핵심인력 귀책사유	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225만원 및 그 기간이자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450만원 및 그 기간이자	
	중소기업 귀책사유				675만원 및 그 기간이자	

⑥ 제4항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지급되는 취업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 등 공제계약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중소기업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지시까지 적립된 취업지원금
2. 핵심인력의 창업·이직·학업 등에 의한 퇴직 등 공제계약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핵심인력에게 있는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적립된 취업지원금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사망, 업무상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취성패 1유형 경로로 적립된 기업기여금은 중소기업에게 반환합니다. <개정 2019.4.5., 2020.3.30.> <개정 2021.3.11.>

1. <삭제 2021.3.11.>
2. <삭제 2021.3.11.>
3. <삭제 2021.3.11.>

⑧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핵심인력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중도해지 된 경우에는 취업지원금 전액을 정부에 반환합니다.

⑨ 시행지침에 정한 사유로 마지막 회차 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은 경우 핵심인력의 요청에 따라 기 적립된 취업지원금 전액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1.3.11.>

⑩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서 해지환급금 수급권자를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신설 2021.3.11.>

제5장 공제금의 지급

제23조(공제사유)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 가입 핵심인력이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제8조의 공제 가입기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고,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기업기여금, 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침에 따라 기업기여금의 납입이 중단된 경우에는 핵심인력 공제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제24조(공제금의 지급) ① 제23조의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기여금 납입누계액,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납입누계액, 취업지원금 적립누계액 및 제2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② 공제금은 공제금 지급계산서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제25조(공제금의 수급권자) 공제금의 수급권자는 계약자인 공제가입 핵심인력으로 합니다. 다만, 핵심인력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6조(공제금 등의 지급청구) ① 공제금의 수급권자 또는 중도해지 신청자는 청년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지급청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급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제27조(공제금 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권자가 직접 납입한 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해지환급금 지급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가입기간 동안 적정하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정부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개정 2019.3.19.>

③ 공제금 및 해지환급금은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른 해당 근무기간까지의 공제부금 및 취업지원금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무자와 해지환급금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지 신청시까지 적립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여 각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공제사유 발생일 또는 중도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8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개정 2019.3.19.>

⑥ 공제금 및 해지환급금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수급권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각 수급권자에게 지급내역을 통지합니다. <개정 2019.3.19.>

제6장 제(諸)이율의 결정

제28조(제(諸)이율의 종류 및 적용방법) ① 제(諸)이율의 종류와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지급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공제사유 후 이율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공제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3. 중도해지이율 :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중도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합니다.

4. 해지 후 이율 : 중도해지 사유발생일로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단리로 계산합니다.

② 공제계약기간 중에 제(諸)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9조(제(諸)이율의 결정 및 공시)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시중금리, 기금건전성, 정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제계약에 관한 지급이율 등 제(諸)이율을 정합니다. <개정 2019.3.19.>

② 제(諸)이율은 매분기 초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합니다. 다만, 시장금리가 급격히 변동하여 제(諸)이율과의 금리차가 현격하게 된 경우에는 적용기간 중에도 제(諸)이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諸)이율을 청년공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합니다. <개정 2019.3.19.>

제7장 공제분쟁의 조정

제30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공제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공제 관련 분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개정 2019.3.19.>

제31조(분쟁조정 신청) 계약자 및 계약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은 공제와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32조(조정의 효력) 분쟁조정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 그 조정결정 및 합의내용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제33조(조정의 중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30조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의 처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신청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공제분쟁에 관한 소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제계약 담당부서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를 통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제8장 정보공개

제35조(정보공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약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제자산의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제자산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공제자산의 건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3.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항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시행일에 맞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항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시행일에 맞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지침의 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항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적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행지침을 따릅니다.

- 제(諸)서식 목차 -

구 분	서식명
제1호	공제계약 청약서
제2호	공제가입증서(기업)
제3호	공제가입증서(핵심인력)
제4호	공제계약 청약거절 통보서
제5호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
제6호	공제계약 취소 요청서
제7호	계약자 변경 승인신청서
제8호	제변경 신청서
제9호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제10호	공제부금 납입중지 신청서
제11호	공제부금 미납내역 및 납부안내
제12호	공제계약 해지 통보서
제13호	공제계약 중도해지 및 해지환급금 청구서
제14호	공제계약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
제15호	공제금 지급청구서
제16호	공제금 지급계산서
제17호	공제 재가입 신청서
제18호	공제부금 납입확인서(핵심인력)
제19호	공제부금 납입확인서(기업)
제20호	공제부금 가상계좌 확인서(핵심인력)
제21호	공제부금 가상계좌 확인서(기업)